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21
----------	------

제출년월일 : 2016.04.12.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개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보조금 지급(안 제4조의 2)
- 나. 법제처, 시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현행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 및 삭제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6. 1. 27. ~ 2016. 2. 17.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불임 1 >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을 “안산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활용 활성화 보조금 지급) 시장은 법 제31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홍보·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청소행정과 김상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활용계장 노현우
	담당자 성명·전화	김은미 (행정 3537)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p> <p>-----</p> <p>-----</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p> <p>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으로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조의 2(재활용 활성화 보조금 지급)</p> <p>시장은 법 제31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진술) <p>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삭 제>
제8조(이의제기) <p>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삭 제>
제9조(강제징수) <p>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u>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제11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p> <p>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p> <p>② 시장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p> <p>③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정한사항 이외의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p>	<p>제11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p> <p>①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홍보·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준용규정) <u>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삭제〉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347호 2009. 2. 9)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41조제1항 300이하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50	150	300
	4. 빙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빙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15조의2제2항)	50	100	300
	5.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6.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의 2제2항)	50	70	100
	7.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8.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제41조제1항 100이하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삭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근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347호 2009. 2. 9)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	<p>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p> <p>가. 식품점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p> <p>(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p> <p>(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품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p> <p>(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p> <p>(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p> <p>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p> <p>(1)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p> <p>(2)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p> <p>〈삭제〉</p> <p>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p>				
		50	100	200	
		30	50	100	
		10	30	50	
		5	10	30	
		50	100	200	
		30	50	100	
		100	200	300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개정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 대)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회용봉투, 쇼핑백 제외)	3	5	10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증권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첨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u>과태료처분통지서</u>	
제 수 제 호 신 목: 과태료 처분통지	
<p>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p> <p>가. 위반일시:</p> <p>나. 위반내용:</p> <p>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 산 시 장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별지 제2호서식></p> <p>(갑) (처분기관 보관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6">과태료 납부통지서</th> </tr> <tr> <td>발행번호</td> <td>제 호</td> <td>회계년도</td> <td></td> <td>세입과목</td> <td></td> </tr> <tr> <td>위반행위자</td> <td>성명</td>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과태료금액</td> <td>원</td> <td>납부기한</td> <td>.. 까지</td> <td>납부장소</td> <td></td> </tr> <tr> <td>위반행위</td> <td>일시</td> <td>내용</td> <td colspan="3"></td> </tr> <tr> <td>위반법률</td> <td>법 제 조</td> <td>발부일자</td> <td>.. .</td> <td>의견제출기한</td> <td>.. 까지</td> </tr> <tr> <td>위반행위자 서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단속공무원 확인</td> <td></td> </tr> </table> <p>특기사항</p>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p> <p><삭 제></p>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6">과태료 납부통지서</th> </tr> <tr> <td>발행번호</td> <td>제 호</td> <td>회계년도</td> <td></td> <td>세입과목</td> <td></td> </tr> <tr> <td>위반행위자</td> <td>성명</td>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과태료금액</td> <td>원</td> <td>납부기한</td> <td>.. 까지</td> <td>납부장소</td> <td></td> </tr> <tr> <td>위반행위</td> <td>일시</td> <td>내용</td> <td colspan="3"></td> </tr> <tr> <td>위반법률</td> <td>법 제 조</td> <td>발부일자</td> <td>.. .</td> <td>의견제출기한</td> <td>.. 까지</td> </tr> <tr> <td>위반행위자 서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d>단속공무원 확인</td> <td></td> </tr> </table>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자정 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안 산 시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명)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안 산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증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안 산 시 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table border="1"> <thead> <tr> <th>제 호</th> <th colspan="3">과태료 납부 독촉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납 부 의 무 자</td> <td>①성 명</td> <td></td> <td>②주민등록번호</td> </tr> <tr> <td colspan="3">③주 소</td> </tr> <tr> <td colspan="3">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td> </tr> <tr> <td colspan="3">⑤위 반 사 항</td> </tr> <tr> <td>⑥과 태 료 금 액</td> <td></td> <td>⑦당초 납부기일</td> </tr> </tbody> </table>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		⑦당초 납부기일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		⑦당초 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p>																						
<별지 제4호서식>																						
<p>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u>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 경) 통 지 서</u></p> <p>주 소 성 명</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고지금액</th> <th>② 취소(변경액)</th> <th>③ 차 액</th> <th>④ 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④ 비 고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④ 비 고																			
<p>취소(변경)사유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5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u></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신청인</td> <td style="padding: 5px;">① 성명</td> <td style="padding: 5px;">② 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③ 주소</td> </tr>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과태료 처분내역</td> <td style="padding: 5px;">④ 부과기관</td> <td style="padding: 5px;">⑤ 납부통지서번호</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⑥ 고지받은일자</td> <td style="padding: 5px;">⑦ 과태료금액</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⑧ 과태료처분사유</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안산시장 귀하</p> </td> </tr> </tbody> </table>		<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u>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p>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안산시장 귀하</p>																				
<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u>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p>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안산시장 귀하</p>																																															
<p><별지 제6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u></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 호</td> <td colspan="3"></td> </tr> <tr> <td style="padding: 5px;">수 신</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발 신 안산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장 (인)</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10px;"> <p>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p> <p>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td> <td style="padding: 5px;">① 성명</td> <td style="padding: 5px;">② 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③ 주소</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과태료처분내역</td> <td style="padding: 5px;">④ 고지일자</td> <td style="padding: 5px;">⑥ 과태료금액</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5px;">⑤ 부과기간</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⑦ 이의제기일자</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p>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td> </tr> </tbody> </table>		<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u>				제 호				수 신	발 신 안산시			장 (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p> <p>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p>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u>																																															
제 호																																															
수 신	발 신 안산시																																														
장 (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p> <p>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p>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